

# 2023년도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사업 공고

해외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이 취업 초기에 원활하게 현지에 적응하고 지속적인 경력개발을 통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“해외취업정착지원금 사업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12월 28일

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

## 사업 개요

### 1. 지원 내용

- 지원 인원 : 3,800명  
\* 지원 인원 달성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
- 지원 금액 : 1인당 500만원

#### < 차수별 지원 금액 >

구분	1차	2차	3차
지원시기	취업 후 1개월	취업 후 6개월	취업 후 12개월
지원금액	250만원	100만원	150만원

\* 2023년도부터 선진국/신흥국 구분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원

• 2021년도와 2022년도 1차 지원금 수령자의 경우, 본인의 1차 지원금 신청일 기준 공고에 따라 2차 및 3차 지원금을 지원함

(예1) 2021년도 1차 수령자 : 2023년도에 3차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 
2021년도 공고에 따라 (선진국) 3차 100만원, (신흥국) 3차 200만원 지원

(예2) 2022년도 1차 수령자 : 2023년도에 2차 및 3차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,  
2022년도 공고에 따라 (선진국) 2차 100만원, 3차 100만원,  
(신흥국) 2차 100만원, 3차 200만원 지원

## 2. 지원 절차

### ○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신청 절차



- ① 취업자는 취업 전 반드시 월드잡플러스 회원가입 및 구직등록을 마쳐야 함
- ② 취업인정기준 : 아래 Ⅱ. 지원 자격 요건 2. 취업인정기준 참조
- ③ 정착지원금 신청 전 현지 발급 서류(근로계약서, 재직증명서)에 대한 취업사실 확인 방법은 다음 3가지 임.
  - 가. 온라인 취업사실확인 신청(월드잡플러스)
  - 나. 취업 국가 영사관에서 공증
  - 다. 아포스티유 협약국의 경우 아포스티유 확인

\* 동일 기업에 계속 재직하는 경우, 2차·3차 신청 시 취업사실 확인 절차 생략 (별도 신청없이 공단에서 확인 함)
- ④⑦⑩ 취업자는 지원금 신청 전 본인의 구체적인 경력(취업처, 재직기간 및 경력 사항(이전 취업처 근무기간 또는 직종 등)을 입력
- ⑥⑨⑫ 매 회차 지원금 신청 시, 모바일 앱 위치정보를 반드시 연동하여야 함 (월드잡플러스 앱 설치 후 사용자 위치정보 제공 동의 필요)
- ⑫ 3차 신청 전 이직하는 경우, 3차 신청 시 취업사실 확인절차 필요

### 1. 지원대상

○ 아래 ①~④에 모두 해당하고 취업인정기준(II.2. 참조)을 충족하는 자

- ① 만 34세 이하('88.1.1 이후 출생자)인 자
- ② 신청자 본인, 부모, 배우자, 자녀의 합산소득이 6분위 이하인 자
  - (미혼인 경우) 취업일자 전월 납입한 본인과 부모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 금액 이하인 자(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, 미납자는 부과액 기준)
  - (기혼인 경우) 취업일자 전월 납입한 신청자 본인, 배우자 및 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 금액 이하인 자(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, 미납자는 부과액 기준)

<기준 금액>		
취업일자	건강보험료율	보험료 기준 금액*
'23년 1월까지	6.99%	₩347,570
'23년 2월부터	7.09%	₩364,010

\* 보험료 기준 금액은 가구소득 6분위 월 소득 금액에 건강보험공단 직장 건강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이며, 지역가입자에도 준용  
 (단, 직장가입자의 경우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실 부담비율이 공시된 보험료율의 1/2인 3.545%이므로 부과금액의 2배를 합산)

\* 지원금 신청화면의 **사전모의계산기**를 통해 소득분위 초과여부 사전확인 후 지원금 신청 화면으로 이동 가능. 본인의 사전모의계산 결과와 서류검토 결과 건강보험료 조회 값은 다를 수 있음

- ③ 월드잡플러스 사전 구직등록(회원가입) 후 근로계약을 작성한 자
  - \* 근로계약서 작성 전 입사한 경우는 입사일 기준으로 함
- ④ '21.'22년도 취업자는 아래 취업일 해당자부터 본인 신청기한 내 신청 가능

1차 지원금	2차 지원금	3차 지원금
'22. 9. 2부터 (선진국/신흥국 동일)	'22. 5. 2부터 (1차 지원금 수령한 경우)	'21. 11. 2.부터 (2차 지원금 수령한 경우)

\* 대상자의 경우 반드시 본인의 신청기한 확인(7쪽 참조) 후 신청

## 2. 취업인정기준 (①~⑤를 모두 만족해야 함)

### ○ 취업비자 : 해당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근로 가능하며, 취업을 목적으로 발급된 비자를 취득해야 함

\* 취업국가 영주권자 또는 (유사)배우자 비자 소지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하고, 근로가 가능하더라도 취업을 목적으로 발급된 비자가 아닌 경우도 배제함

- 국가별 취업비자 인정 기준을 [붙임 2] 참조
- 관광, 학업 등 취업활동이 불가능한 비자는 불인정
-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\*을 통한 취업자만 인정

\* 해외취업알선사업, 해외취업연수사업(K-Move스쿨 등) 등

### ○ 취업직종 : 단순 노무직종 제외(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표 적용)

- 근로계약서 및 재직증명서에 직종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, 사업주가 작성한 직종 설명서(직무기술서)를 추가 제출하여 단순노무직이 아님을 증명

<제외 직종(단순노무직종)>

청소(환경미화)원, 세차원, 주유원, 가정부(가사, 육아도우미), 음식서비스종사자(주방보조, 음식서빙 등), 숙박시설종사자(호텔, 모텔, 오락시설 등에서 청소 및 하우스키퍼 등) 등 기타 단순 노무종사자로 판단되는 업종

### ○ 임금수준 : 연봉 1,700만원 이상

- 연봉 환율은 '23. 1. 2. 고시환율 적용

\* '22년도 취업 후 '23년도에 1차를 신청하는 경우라도 '23년도 공고 환율 및 연봉기준 적용

- 근로계약서상 연봉이 기준액 미만이나, 실수령액이 기준액 이상일 경우는 신청일 기준 반드시 최근 연속된 3개월분의 급여명세서를 제출하여 증명

### ○ 근로계약기간 : 1년 이상

- 공단사업을 통한 워킹홀리데이비자 취업자 중 한 직장에서 1년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(호주, 홍콩 등) 타 업체와 추가 계약하여 총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

### ○ 취업 업체 : 다국적기업, 현지로컬기업, 국내기업 해외법인, 한상 등

\* 근무지는 외국이어야 하고, 외국계 기업으로 근무지가 국내인 경우 제외

### 3. 지원 제외 대상 및 환수 조치

#### ○ 제외대상

-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임의로 위·변조한 경우
  - \* 월드잡플러스 블랙리스트 등재 및 3년간 공단 해외취업 지원사업 참여 불가
- 해외취업정착지원금(舊 해외취업성공장려금)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 (1차 지원금만 지원받은 경우에도 동일) 또는 동일 차수 중복지원 등 정착지원금 내 중복수혜가 발생한 경우
- 지원금에 신청한 동일한 해외취업사실로 지방자치단체 유사사업을 지원받은 경우
- 『해외취업정착지원금 심의위원회』에서 지원 불가로 의결한 경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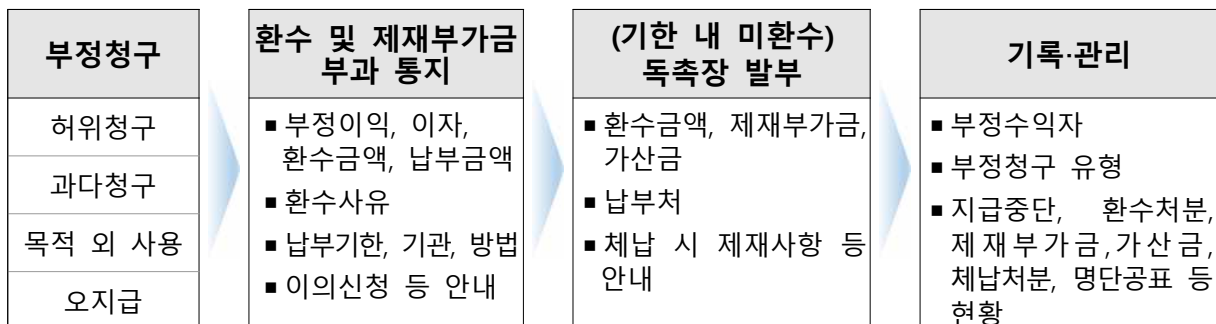
####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

- 위 원 장 : 국제인력본부장
- 심의위원 : 해외취업 또는 이와 업무 연관성이 있는 공단 직원 및 전문가
- 심의내용 : 지원대상자 결정 등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등

- 그 밖에 해외취업정착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

#### ○ 환수조치

- 위에 명시한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,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는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사업 운영지침 및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(이하 공공재정환수법)」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부정이익 환수, 이자 및 제재부가금 부과, 고액부정청구행위자 명단공표 등 조치
- 공공재정환수법 부정청구 등 환수 절차



신청기한은 월드잡플러스 시스템에 따르며, 한국 시간 기준임을 유의

## 1. 사업 일정

○ 사업기간 : 2023.1.1.부터 ~ **예산소진 시까지**

\* 예산소진 임박 시 마감일 사전 공지(마감 2주전 월드잡 공지, 개별알림 없음) 후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, 접수된 신청서는 검토 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함

○ 지원금 지급 : 서류 신청일 기준 한달에 두 번(1일~15일, 16일~말일) 승인된 신청서류의 출입국기록조회를 마친 뒤 다음 달(익월) 15일, 말일 경 지급

\* 예시 : '23.1.2.~1.15. 신청 → 2.15. 지급, '23.1.16.~1.31. 신청 → 2.28. 지급

\* 출입국 기록 추가 확인 등 기타 사유 발생 시 지급일자 지연될 수 있음



## 2. 신청 방법

(모바일) 「월드잡플러스 앱 설치→로그인→사후지원센터→정착지원금 신청하기」 이용

(PC) 「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 로그인→사후지원센터→정착지원금 신청하기」 이용

○ 제출서류를 이미지 파일(jpg, png, pdf)로 각각 업로드 후, 신청하기 클릭

\* 개인정보이용 및 취업정보 제공 동의서(본인용)의 경우, 월드잡플러스 지원금 신청 메뉴에서 전자서명 후 제출함

(PC 화면)	(모바일 화면)
 <p>월드잡플러스 International Integrated Information Network</p> <p>채용·모집 해외취업 상담</p> <p>홈 &gt; 사후지원센터 &gt; 출국 및 현지 정착 &gt; 정착지원금 신청</p> <p>정착지원금 신청 안내문 해외취업정착지원금 22년 하반기 추가 공고문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안내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지급(예정)일자 안내문 모바일 앱 위치정보 관련 안내문 2022년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신청 관련 취업사실여부 확인기관 안내문</p> <p>취업사실 확인신청 바로가기</p>	 <p>채용·모집 사후지원센터</p> <p>해외취업상담 사후지원센터 홈</p> <p>해외취업교육 출국 및 현지정착</p> <p>출국 전 오리엔테이션</p> <p>정착지원금 신청</p> <p>정착지원금 문의</p>

### 3. 신청기한

- 1차 지원금 : 근로 개시 1개월 이후부터 4개월 시점까지
- 2차 지원금 : 근로 개시 6개월 이후부터 8개월 시점까지
  - \* 단, 1차 수령자가 동일업체에서 6개월 간 계속 근로한 경우만 신청 가능
- 3차 지원금 : 근로 개시 12개월(365일) 이후부터 14개월 시점까지
  - \* 단, 2차 수령자가 12개월(365일) 이상 근로하고 취업비자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
- 1차, 2차 지원금 수령 후 이직한 경우 3차 지원금 신청
  - (신청기한) 최초 기업 근로 개시 12개월(365일) 이후부터 14개월 시점까지이며 이직 준비 기간은 재직기간 불포함. 준비기간으로 인한 신청기한 연장 불가
  - (지원 금액) 1차, 2차 지원금 당시의 최초 취업국가 기준 적용
  - (취업인정기준) 1차 지원금 신청기준과 동일
  - (재직기간 합산) 1,2차 지원금 수령 당시의 회사에서 근무한 최소 6개월 이상의 경력과 이직한 회사에서의 경력을 합산하여 12개월 (재직증명서 기준)이 되어야 함.
    - \* 이직 전 회사의 경력증명서, 퇴직증명서도 인정 가능
- 아래 제시된 취업일 해당자는 반드시 본인의 신청기한을 확인 후 본인 신청기한 내 신청
  - \* 본인 신청기한 초과 시 절대 신청 불가

- ▶ (1차) '22.9.2 ~ 12.31. 취업자의 경우 본인의 1차 지원금 신청기한 내 신청가능
- ▶ (2차) '22년도 1차 지원금을 지급받은자 중 '22.5.2 취업자부터 본인의 2차 지원금 신청기한 내에 신청가능
- ▶ (3차) '22년도 2차 지원금을 지급받은자 중 '21.11.2 취업자부터 본인의 3차 지원금 신청기한 내에 신청가능

## 4. 제출서류

<b>1차 지원금</b>	(1) 취업비자 (2) 근로계약서 (3) 재직증명서(근속 1개월 이후 발급) (4) 본인통장사본(한국계좌일 것) (5) 가족관계증명서(본인 기준 상세본) (6) 개인정보이용 및 취업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서(본인)(전자서명) (7)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서(부모/배우자/기타가족용)([서식2] 참조)
<b>2차 지원금</b>	(1) 취업비자 (2) 재직증명서(근속 6개월 이후 발급) (3) 개인정보이용 및 취업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서(본인)(전자서명)
<b>3차 지원금</b> (동일기업 근무자)	(1) 취업비자 (2) 재직증명서(근속 12개월(365일) 이후 발급) (3) 개인정보이용 및 취업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서(본인)(전자서명)
<b>3차 지원금</b> (이직한 경우)	(1) 취업비자 (2) 1.2차 지원금 수령 당시 회사의 재직증명서(근속 6개월 이후 발급) (3) 이직한 회사의 근로계약서 (4) 이직한 회사의 재직증명서 (5) 개인정보이용 및 취업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서(본인)(전자서명)

### ○ 제출 시 유의사항

- 제출서류에서 모든 지원 자격 요건 및 취업인정기준이 확인 가능해야 함
- 서류상 언어가 국·영문이 아닌 경우 반드시 원본과 번역본을 함께 제출  
\* 번역은 원본과 내용이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신청자 본인이 하여도 무관함
- 현지 발급 서류인 근로계약서 및 재직증명서는 ① 영사관 공증 ② 취업사실확인 신청·승인 ③ 아포스티유 공증 등 세 가지 중 한 가지를 완료한 후 신청하여야 함

\* ②의 경우, 반드시 월드잡플러스-취업사실확인 온라인 승인을 받은 후 지원금 신청

지원금 신청 단계		취업사실확인 또는 공증 절차
1차		필수
2차		생략
3차	동일기업 근무 시	생략
	근속 6개월 후 이직	필수

- 매 차수별 신청 시 월드잡플러스 앱 - 위치정보 제공에 동의하여야 함



## 제출서류 준비 및 작성 안내

차수	제출서류	유의사항
1차 지원금	① 취업 비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합법적으로 취업을 목적으로 발급된 체류 가능한 비자</li> <li>▶미국 취업자(J1 비자 포함)의 경우 여권에 부착된 비자 사본만 인정 가능(2, 3차도 동일)</li> <li>▶태국 취업자의 경우 Work permit과 여권에 부착된 Non-immigration B 비자 함께 제출</li> <li>▶비자 발급일이 입사 일자보다 빠른 경우 증빙서류를 요청 할 수 있음</li> </ul>
	② 근로 계약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업현황(업체명, 주소, 전화번호), 근로계약기간, 취업직종, 임금수준, 근로시간, 업무내용, 주요 복리후생(사회보험, 숙식 제공), 근로계약 체결일, 사용자 및 근로자 서명 등 기재</li> <li>▶해당 사항이 기재된 Offer Letter 등도 가능, <b>사업주 서명 필수</b></li> <li>▶미국의 경우 DS-7002(TIPP) 서류도 근로계약서 대체 가능 : 단 취업자, 스폰서 기관, 취업처 서명 모두 기재된 완성본에 한함</li> </ul>
	③ 재직 증명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재직증명서에는 기업명, 재직자 성명, 담당업무, 서류 발급일자, 근무시작일(재직기간),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등 기재</li> <li>▶서류 발급일자와 근무시작일은 연월일까지 기재되어야 하며 반드시 <b>근무시작 1개월 이후에 발급된</b> 서류를 제출</li> <li>▶재직증명서상 근무시작일과 전산상 취업일은 동일해야 함</li> </ul>
	④ 통장 사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거래 가능한 한국 시중은행의 통장 사본/인터넷 통장 표지/계좌개설 확인서 중 택 1</li> <li>- 제출한 통장 사본과 지원금을 수령할 계좌정보는 동일해야 함</li> <li>▶적금통장, 해외 은행 통장 등 <b>송금 불가능한 통장 제출 불가</b></li> <li>▶불가피한 경우 사유 검토 후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가족 통장 제출 가능</li> <li>▶<b>인터넷뱅킹 단순 캡처 화면 인정 불가</b></li> </ul>
	⑤ 가족 관계 증명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반드시 신청자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(한글) 제출</li> <li>▶신청자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님 또는 배우자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의미하며, <b>취업 전(前)월 이후에 발급된 서류 제출(일반본, 영문본 제출시 반려됨)</b></li> </ul>
	⑥ 개인정보 이용 및 취업정보 제공 동의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본인용) 월드잡플러스 신청 메뉴에서 전자서명</li> <li>- (가족용)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으로 1부 제출</li> <li>▶가족용 개인정보이용동의서에는 부모님 또는 배우자/자녀(기혼인 경우)의 <b>자필 서명 또는 날인</b>이 모두 있어야 하며, 만 14세 미만 자녀는 보호자가 대신 정보 기재 가능</li> <li>▶가족 구성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필수 작성(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 등록번호 작성, 둘다없는 경우 현지신분증 제출)</li> <li>▶부모님의 이혼, 사망의 사유로 모두의 서명을 받지 못할 경우, <b>부 또는 모(부양자)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(상세본)를 추가로 제출</b> ([붙임3] 참조)</li> </ul>

차수	제출 서류	유의사항
2차 지원금	① 취업 비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합법적으로 취업을 목적으로 발급된 체류 가능한 비자</li> <li>▶미국 취업자(J1 비자 포함)의 경우 여권에 부착된 비자 사본 필히 제출</li> <li>▶태국 취업자의 경우 Work permit과 여권에 부착된 Non-immigration B 비자 함께 제출</li> <li>▶일본 취업자의 경우 재류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재류카드 (앞면) 제출 <b>(재류자격인정증명서는 불인정)</b></li> <li>▶중국 취업자의 경우 거류증(工作) 추가 제출</li> </ul>
	② 재직 증명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재직증명서에는 기업명, 재직자 성명, 담당업무, 서류 발급일자, 근무시작일(재직기간),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등 기재</li> <li>▶서류 발급 일자와 근무 시작일은 연월일까지 기재되어야 하며 <b>반드시 근무 시작 6개월 이후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</b> (6개월 경과 이전에 발급한 서류의 경우 반려됨)</li> </ul>
	③ 개인정보이용 및 취업정보제공 동의서(월드잡플러스 메뉴에서 전자서명)	
3차 지원금 ↓ 동일 기업 재직인 경우	① 취업 비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합법적으로 취업을 목적으로 발급된 체류 가능한 비자</li> <li>▶미국 취업자(J1 비자 포함)의 경우 여권에 부착된 비자 사본 필히 제출</li> <li>▶태국 취업자의 경우 Work permit과 여권에 부착된 Non-immigration B 비자 함께 제출</li> <li>▶일본 취업자의 경우 재류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재류카드 (앞면) 제출 <b>(재류자격인정증명서는 불인정)</b></li> <li>▶중국 취업자의 경우 거류증(工作) 추가 제출</li> </ul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.2차 지원금 신청 당시 제출한 비자가 만료된 경우, 계속 근로를 증명할 수 있는 갱신된 비자를 추가로 제출 (갱신된 비자 제출 시 기존 비자 사본도 함께 제출)</li> </ul>
	② 재직 증명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재직증명서에는 기업명, 재직자 성명, 담당업무, 서류 발급일자, 근무시작일(재직기간),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등 기재</li> <li>▶서류 발급일자와 근무시작일은 연월일까지 기재되어야 하며 <b>반드시 근무시작 12개월(365일)이후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</b> (12개월(365일) 경과 이전에 발급한 서류의 경우 반려됨)</li> </ul>
	③ 개인정보이용 및 취업정보제공 동의서(월드잡플러스 메뉴에서 전자서명)	

차수	제출 서류	유의사항
3차 지원금 ↓ 이직한 경우	① 취업 비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합법적으로 취업을 목적으로 발급된 체류 가능한 비자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미국 취업자(J1 비자 포함)의 경우 여권에 부착된 비자 사본 필히 제출</li> <li>▶태국 취업자의 경우 Work permit과 여권에 부착된 Non-immigration B 비자 함께 제출</li> <li>▶일본 취업자의 경우 재류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재류카드 (앞면) 제출 <b>(재류자격인정증명서는 불인정)</b></li> <li>▶중국 취업자의 경우 거류증(工作) 추가 제출</li> </ul> </li> <li>- 1.2차 지원금 신청 당시 제출한 비자가 만료된 경우, 계속 근로를 증명할 수 있는 갱신된 비자를 추가로 제출 (갱신된 비자 제출 시 기존 비자 사본도 함께 제출)</li> </ul>
	② 재직 증명서 (이직 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3차 지원금 신청 전 재직했던 회사의 재직증명서에는 기업명, 재직자 성명, 담당업무, 서류 발급일자, 근무 시작일(재직기간),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등 기재</li> <li>- 반드시 6개월 이상의 경력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함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서류 발급일자와 근무시작일은 연월일까지 기재되어야 하며 반드시 최초 근무시작 6개월 이후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 <b>(6개월 경과 이전에 발급한 서류의 경우 반려됨)</b></li> </ul> </li> </ul>
	③ 근로 계약서 (이직 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이직한 회사의 근로계약서(1년 이상 계약(미국제외))를 추가 제출해야 하며, 기업현황(업체명, 주소, 전화번호 등), 근로 계약기간, 취업 직종, 임금수준, 근로시간, 업무 내용, 주요 복리후생(사회보험, 숙식 제공 등), 근로계약 체결일, 사용자 서명 및 근로자 서명 등 기재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해당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Offer Letter 등도 가능하며 사업주 서명 필히 기재</li> <li>▶미국의 경우 DS-7002(TIPP) 서류도 근로계약서 대체서류로 가능 : 단 취업자, 스폰서 기관, 취업처 서명 모두 기재된 완성본에 한함</li> </ul> </li> </ul>
	④ 재직 증명서 (이직 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이직한 회사의 기업명, 재직자 성명, 담당업무, 서류 발급일자, 근무시작일(재직기간),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,</li> <li>- ②와 합산하여 반드시 12개월(365일) 이상의 경력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함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서류 발급일자와 근무시작일은 연월일까지 기재되어야 함</li> </ul> </li> </ul>
	⑤	<p>개인정보이용 및 취업정보제공 동의서(월드잡플러스 메뉴에서 전자서명)</p> <p>* 이직 후 3차 지원금 신청 시에는 이직 후 직장에서의 근로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모두에 대해 1차 신청처럼 취업사실 확인을 득하여야 함</p>

## IV

## 기타 사항

- 지원금 신청서는 접수 순으로 검토 후 지급하며, 예산이 한정된 관계로 예산 소진 시 즉시 사업을 마감함.
  - \* 서류마감기한(필요 시 별도 공지)이 남았더라도 사업 마감시 신청 불가
- 지원금 신청 및 서류 제출 등 제반 절차는 월드잡플러스 앱 또는 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(www.worldjob.or.kr)를 통해서만 가능
  - \* 방문 및 우편접수는 불가함
- 신청기한은 개별적으로 안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월드잡플러스 '나의 신청기한' 및 공고문을 통해 확인 필요
- 출입국 기록 소명 사유 발생 시 신청자의 지원금 지급예정일로부터 2개월 내에 소명해야 하며, 기한 내 소명하지 않을 시 서류 승인 취소 및 지원금 지급 불가
  - \* 소명기한이 남았더라도 반드시 지원금 사업기간 내 소명, 마감 이후 소명 불가
- 1차 지원금 서류 제출 시,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세본(한글)으로 제출
  - \*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(한글)은 열람용이 아닌 것으로 발급받아 제출

### 가족관계증명서(일반) → 반려

가족관계증명서(일반)

등록기준지					
구분	성명	출생연월일	주민등록번호	성별	본
본인				남	
가족사항					
구분	성명	출생연월일	주민등록번호	성별	본
부				남	
모				여	

※ 위 가족관계증명서(일반)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동일함을 증명합니다.  
2021년 11월 08일  
법원행정처 전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

※ 위 증명서는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을 원출한 일반증명서입니다.  
발급일자 : 06년 12월  
신청인 :

###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→ 승인

가족관계증명서(상세)

등록기준지					
구분	성명	출생연월일	주민등록번호	성별	본
본인				남	
가족사항					
구분	성명	출생연월일	주민등록번호	성별	본
부				남	
모				여	

※ 위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동일함을 증명합니다.  
2021년 11월 03일  
법원행정처 전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

※ 위 증명서는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을 원출한 상세증명서입니다.  
발급일자 : 21년 06월  
신청인 :

-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, 지원 취소 및 환수
  - \* 월드잡플러스 내 연락처(휴대 전화번호, 이메일, 현지 연락처 등) 기재 착오 또는 변경 사항 미반영 등으로 인해 연락 불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 책임임

【해외취업정착지원금 지원절차】

절 차	주 체	일 정	수행 내용
① 회원가입 및 구직등록	구직자	연 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월드잡플러스 (<a href="http://www.worldjob.or.kr">www.worldjob.or.kr</a>) 기존회원 가입 불필요</li> </ul>
↓			
② 취업성공	구직자	연 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취업 증빙 서류 확보 및 1차 지원금 신청 준비</li> </ul>
↓			
③ 1차 지원금 신청 (증빙서류 제출)	구직자	근로개시 1개월 이후부터 4개월 시점까지 신청 가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업체에서 1개월 근무</li> <li>비자사본 등 제출서류 월드잡플러스 업로드</li> </ul>
↓			
④ 1차 지원금 지급 또는 반려	공 단	월 15일 및 말일 기준으로 승인 후 익월 입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증빙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 또는 지원요건 미충족 시 반려</li> <li>'23년 지원은 예산범위 내 접수순 마감</li> </ul>
↓			
⑤ 2차 지원금 신청 (증빙서류 제출)	구직자	근로개시 6개월 이후부터 8개월 시점까지 신청 가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동일업체에서 6개월 근무</li> <li>비자사본 등 제출서류 월드잡플러스 업로드</li> </ul>
↓			
⑥ 2차 지원금 지급 또는 반려	공 단	월 15일 및 말일 기준으로 승인 후 익월 입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증빙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 또는 지원요건 미충족 시 반려</li> <li>'23년 지원은 예산범위 내 접수순 마감</li> </ul>
↓			
⑦ 3차 지원금 신청 (증빙서류 제출)	구직자	근로개시 12개월 이후부터 14개월 시점까지 신청 가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최초 취업일 후 12개월 근무</li> <li>비자사본 등 제출서류 월드잡플러스 업로드</li> </ul>
↓			
⑧ 3차 지원금 지급 또는 반려	공 단	월 15일 및 말일 기준으로 승인 후 익월 입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증빙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 또는 지원요건 미충족 시 반려</li> <li>'23년 지원은 예산범위 내 접수순 마감</li> </ul>

**붙임 2****취업비자 인정기준**

순번	국가	취업비자 인정기준
1	일본	- 취업비자 : 기술·인문지식·국제사무, 기능
2	캐나다	- 취업비자 : Work Permit, 한-캐FTA - 인턴비자 : Post-graduation Work Permit
3	호주	- 취업비자 : 482고용비자, 407비자 등
4	싱가포르	- 취업비자 : EP(전문인력비자), S pass, WP(work permit)
5	중국	- 취업비자 : Z비자, (홍콩 : EMPLOYMENT비자), 거류증(工作)
6	미국	- 취업비자 : H-1B, H-1C, H-2B 등 - 인턴비자 : OPT(F1비자 같이 제출), J-1
7	뉴질랜드	- 취업비자 : Work Visa
8	필리핀	- 취업비자 : 9G비자, 47(a)(2)비자, AEP, Clark Visa
9	인도네시아	- 취업비자 : Stay Permit Index가 표시되어 있는 ITAS/KITAS
10	베트남	- 취업비자 : LD (거주증 앞뒷면 모두 제출)
11	말레이시아	- 취업비자 : Employment Pass
12	아랍에미리트	- 취업비자 : Residence Visa
13	독일	- 취업비자 : Residence For Employment, EU Blue Card

※ 상기 국가 외 취업국가는 1년 이상의 근로가 가능한 해당국 취업비자 인정

### 붙임 3

### 가족관계증명 관련 제출서류

- 신청자 본인이 기혼일 경우 신청자 본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(취업 전월 이후 발급)만 제출
- 신청자 본인이 미혼이며 부모 모두 생존할 경우 신청자 본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(취업 전월 이후 발급)만 제출
- 단, 신청자가 미혼이지만 부 또는 모가 사망/이혼/재외국민/외국인일 경우 아래 표에 안내된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함

#### <추가 제출서류>

구분	부	모	제출서류(상세본)	추가서류
신청자 미혼	생존	이혼	가족관계증명서(부)	-
	생존	사망	가족관계증명서(부)	-
	생존	재외국민·외국인	가족관계증명서(부)	재외국민·외국인 증빙서류
	이혼	생존	가족관계증명서(모)	-
	이혼	사망	가족관계증명서(부 또는 모)	-
	이혼	이혼	가족관계증명서(부 또는 모)	-
	이혼	재외국민·외국인	가족관계증명서(부)	재외국민·외국인 증빙서류
	사망	생존	가족관계증명서(모)	-
	사망	이혼	가족관계증명서(부 또는 모)	-
	사망	사망	가족관계증명서(본인)	-
	사망	재외국민·외국인	가족관계증명서(부)	재외국민·외국인 증빙서류
	재외국민·외국인	생존	가족관계증명서(모)	재외국민·외국인 증빙서류
	재외국민·외국인	이혼	가족관계증명서(모)	재외국민·외국인 증빙서류
	재외국민·외국인	사망	가족관계증명서(모)	재외국민·외국인 증빙서류
	재외국민·외국인	재외국민·외국인	-	재외국민·외국인 증빙서류

\* 부모·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모두 신청자 본인이 인터넷 발급 가능(정부24, 대법원)

\*\* 발급된 서류는 온라인 신청 시 파일 업로드 제출 가능



##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

### 1.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관한 사항

해외취업정착지원금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「고용정책기본법」 제15조 부터 제15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 43조의 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기 위하여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.

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: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신청자 선정·심사(출입국 기록, 소득분위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자격 및 보험료 납부액 조회, 유사사업 중복수혜 여부)

수집·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·이용 기간

구분	개인정보	보유·이용기간
필수 항목	(본인) 성명, <u>주민등록번호</u> , 주소, 이메일, 전화번호, 계좌정보, 위치정보	준영구

### 2. 개인정보의 3자 제공에 관한 사항

해외취업정착지원금 지원 신청 및 해외취업지원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「고용정책기본법」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「개인정보보호법」 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.

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: 한국산업인력공단, 고용노동부, 법무부, 행정안전부, 외교부, 건강보험공단, 한국고용정보원

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·제공 목적 : 해외취업 지원금 지원 대상(구직등록 정보, 건강보험정보, 출입국사실확인, 유사사업 지원금 수혜여부) 및 참여자의 사후관리 지원 및 해외취업 효과분석, 정책방향 수립

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: 성명, 성별, 주민등록번호, 전화번호, 취업국가, 취업처, 직종, 이직/퇴직여부, 임금, 국내복귀·취업여부

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, 이용기간 : 취업일로부터 2년간

\*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

### 3.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

※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합니다.

개인정보 처리사유	개인정보 항목	수집 근거
해외근무 사실·소득분위·중복수혜 확인	주민등록번호	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의2 및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2

※ 귀하는 상기 1~2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(참여자 선정 제한,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지급 제한 등)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성명	주민등록번호	수집이용	3자제공	서명



##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(가족용)

본인은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신청자 \_\_\_\_\_ 의 지원금 지원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본인의 건강보험자격사항 및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정보를 관할 기관에 조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.

- ▣ 수집 정보 : 성명, 신청자와의 관계, 연락처(휴대전화번호)
- ▣ 조회 정보 : 해당자의 건강보험자격사항 및 건강보험료 납부액
- ▣ 조회 목적 : 소득분위 확인 및 유사사업 중복수혜 조회
- ▣ 정보 보유기간 : 준영구

성 명	신청자와의 관계 (부/모/배우자/자녀)	주민등록번호	개인정보 수집.이용에 동의하십니까?	서 명
		휴대전화번호		
			동의( ), 미동의( )	
			동의( ), 미동의( )	
			동의( ), 미동의( )	
			동의( ), 미동의( )	
			동의( ), 미동의( )	
홍길동	부	123456-123456	동의(○), 미동의( )	홍길동
		010-1234-5678	동의(○), 미동의( )	홍길동

※ 위의 개인정보 수집.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 
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신청자의 지원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

<기타 고지사항> ※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.이용합니다.		
개인정보 처리사유	개인정보 항목	수집 근거
건강보험자격 및 보험료 납부액 조회를 통한 소득분위확인	<b>주민등록번호</b>	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의2 및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2

2023. . .